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2025년 제2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5. 9. 11.(목) 16:00~17:15

○ 장 소 : 천주교 청주교구청 대회의실

○ 참석이사 : 총 정원 8명 중 8명 참석

김상수 대표이사, 조중희 상임이사, 홍학준 이사, 박종수 이사,
김성우 이사, 송홍영 이사, 박진홍 이사, 장규연 이사

○ 배 석 자 : 박홍주 감사, 김은경 사무국장, 서보람 팀장(법인사무국)

○ 안 건 :

- 제1호 의안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 12개소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심의
- 제2호 의안 충청북도노인호보전문기관 사용 차량(57서6124)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 제3호 의안 프란치스코의집 사용 차량(91어7270)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 제4호 의안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 차량(88모4713)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 제5호 의안 홍학준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
- 제6호 의안 김성우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
- 제7호 의안 조중희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승인에 관한 심의
- 제8호 의안 상임이사 변경에 관한 심의
- 제9호 의안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여부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 제10호 의안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여부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 제11호 의안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여부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 제12호 의안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여부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 제13호 의안 제7차 정관 개정(안)에 관한 심의

- 회의순서 : 시작기도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전차 회의내용 보고 -
안전심의 - 기타보고 및 공지사항 - 폐회선언 및 마침기도

1. 시작기도



2.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시작기도 후 김은경 사무국장이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정관 제28조제1항에 의거 이사 8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함. 김상수 대표이사는 성원을 확인하고 2025년 제2차 임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이후 회의는 조중희 상임이사가 진행함.]

3. 전차 회의내용 보고

상임이사가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전차 회의 내용 보고를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전차 회의는 2025년 6월 25일(수) 15시 00분부터 15시 30분 까지, 2025년 제1차 임시 이사회로 진행되었음을 보고함.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장 임명에 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안순기 관장이 2025년 7월 1일자로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충주성심맹아원 겸 공동생활가정 “해맑음” 기관장 임명에 관한 심의 결과에 따라 조원봉 원장이 2025년 7월 1일자 충주성심맹아원 겸 공동생활가정 “해맑음” 기관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함.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함.

상임이사는 전차 회의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나 질의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모든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4. 안전심의

**【제1호 의안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 12개소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심의】**

상임아사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관하여 해당 기관.시설의 기관장이 배석하여 직접 설명해야 하나 기관.시설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안내하고 이차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 12개소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등의 반영, 해당 기관.시설별로 안내된 2025년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을 적용한 인건비 편성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2024년 결산에 따라 확정된 이월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을 설명함. 이어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의 기관장을 대신하여 기관별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함.

(단위: 천원)

번호	기관.시설명	본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 (B-A)	편성 내용
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940,086	3,165,177	225,091	자료집 p.1~2
2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16,776,302	14,594,503	▲2,181,799	자료집 p.3~4
3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지원센터	965,188	1,046,048	80,860	자료집 p.5~6
4	공동생활가정 “야고보의집”	108,079	117,850	9,771	자료집 p.7~8
5	공동생활가정 “모니카의집”	132,568	138,935	6,367	자료집 p.9~10
6	충주성심맹아원	3,122,027	3,165,711	43,684	자료집 p.11~12
7	공동생활가정 “해맑음”	113,115	114,007	892	자료집 p.13
8	프란치스코의집	6,108,029	6,311,735	203,706	자료집 p.14~15
9	모퉁잇돌	626,918	635,102	8,184	자료집 p.16~17
10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567,243	627,170	59,927	자료집 p.18~19

번호	기관.시설명	본예산 (A)	추경예산 (B)	증감 (B-A)	편성 내용
11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444,362	486,865	42,503	자료집 p.20~21
12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87,525	344,143	56,618	자료집 p.22~23
13	법인사무국	746,907	925,536	178,629	자료집 p.24

상임이사는 법인사무국 및 산하 기관.시설 12개소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함. 김성우 이사는 법인 산하 기관.시설들의 근무조건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우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등 기본 지침에 명시된 수당 외에 기관에서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프란치스코의집 종사자 인건비 항목에는 기관에서 별도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2024년 제3차 임시 이사회(2024.10.2.)의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심의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을 우선 밝히며 기존에 지급해 온 수당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작년 예산부터 점차 줄여가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이에 올해 지급하는 별도 수당은 작년보다 줄었고 앞으로 3년 안에 정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김상수 대표이사는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이전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방식은 근무표를 기준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시급제였으나 올해 호봉제로 변경되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의 5급 직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재편성하였을 설명함.

상임이사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홍학준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2호 의안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용 차량(57서6124)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용 차량(57서6124)의 불용 처리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용 차량(57서6124)에 대한 불용 처리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을 설명하고 57서6124 차량은 (재)바보의나눔재단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재)바보의나눔재단으로부터 폐차 처리 후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받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며 세부적인 자료는 이사회 자료집을 참조할 것을 요청함.

기관명	불용 처리 대상	불용 처리 사유	향후 계획	비고
충청북도 노인 보호 전문 기관	57서6124 모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차량의 내용연수(조달 청고시 8년) 기준을 초과하였음. ◦ 차량의 노후화로 주행 시 시동이 꺼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유지비용 및 수리비가 증가함.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불용결정 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불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 집행 시기 및 자금원천 등을 파악하여 처리할 예정임. 	자료집 p.25

상임이사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김성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박진흥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3호 의안 프란치스코의집 사용 차량(91어7270)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프란치스코의집 사용 차량(91어7270)의 불용 처리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프란치스코의집 사용 차량(91어7270)에 대한 불용 처리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을 설명함. 더불어 91어7270은 지자체 기능보강사업(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은 차량으로 차량 처분 승인 요청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차량 불용 처분 승인 공문을 회신받았음을 설명하며 세부적인 자료는 이사회 자료집을 참조할 것을 요청함.

기관명	불용 처리 대상	불용 처리 사유	향후 계획	비고
프란치스코의집	91어7270 그랜드 스타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차량의 내용연수(조달 청고시 8년) 기준을 초과하였음. ◦ 차량의 노후화로 운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엔진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리비 및 유지비용이 증가함. ◦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불용결정 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불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 집행 시기 및 자금 원천 등을 파악하여 처리할 예정임. 	자료집 p.26

상임이사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장규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송홍영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4호 의안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 차량(88모4713)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 차량(88모4713)의 불용 처리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 차량(88모4713)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는 당초 이사회 안건 안내 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사회 준비 중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추가된 안건임을 설명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88모4713은 사무용으로 마련한 차량이므로 기관의 지침에 따라 불용 처리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세부적인 자료는 이사회 자료집 참조를 요청함.

기관명	불용 처리 대상	불용 처리 사유	향후 계획	비고
해원 장애인종합복지관	88모4713 포터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차량의 내용연수(조달청고시 9년) 기준을 초과하였음. ◦ 차량의 노후화로 운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 2025년 9월 5일(금) 업무수행 후 복귀 중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함. ◦ 수리 비용이 보험 적용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수리 후 사용하는 것보다 불용결정 후 폐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불용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예산 집행 시기 및 자금 원천 등을 파악하여 처리할 예정임. 	자료집 p.27

상임이사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박종수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김성우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5호 의안 홍학준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홍학준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홍학준 이사의 임기는 2025년 12월 18일까지이나 홍학준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해 왔음을 설명함. 이에 신임 이사 후보로 현재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원장인 **이혜상**을 추천하며 이사회 자료에 명시된 신임 이사 후보의 이력 검토를 요청함. 더불어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일까지 3년임을 설명함.

상임이사는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하여 질의를 요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송홍영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6호 의안 김성우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김성우 이사의 사임 의사 전달에 따른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김성우 이사의 임기는 2026년 9월 24일까지이나 김성우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해 왔음을 설명함. 이에 신임 이사 후보로 현재 교구 성모성심본당 주임인 이상백 신부를 추천하며 이사회 자료에 명시된 신임 이사 후보의 이력 검토를 요청함. 더불어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일까지 3년임을 설명함.

상임이사는 신임 이사 선임에 대하여 질의를 요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홍학준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박진흥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7호 의안 조중희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승인에 관한 심의】

[제7호 의안 및 제8호 의안은 김상수 대표이사가 진행함.]

대표이사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중희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선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우리 법인 정관 제18조(임원의 임기 등)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조중희 이사는 2022년 제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2025년 9월 25일 임기가 만료됨을 설명함.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중희 이사의 연임을 제안하며 조중희 이사의 새로운 임기는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일까지 3년임을 설명함. 더불어 우리 법인 정관 제29조(의결제척사유)에 의거하여 조중희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을 설명함. 이에 박종수 이사가 조중희 이사의 연임을 재청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중희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조중희 이사의 연임 승인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8호 의안 상임이사 변경에 관한 심의】

대표이사는 제7호 의안과 연결하여 제8호 의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함.

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변경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조중희 이사가 임기 만료 후 연임되었으나 이사 연임이 되더라도 상임이사 선임과는 다른 부분임을 설명함. 우리 법인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설명함.

대표이사가 그동안 상임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조중희 이사를 상임이사로 지명하며 의결을 요청함.

이에 홍학준 이사가 동의하고 송홍영 이사가 재청하여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은 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중희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가 찬성하여 조중희 이사의 연임 승인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9호 의안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원 계획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원 계획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청주청원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청주시로부터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운영법인 선정 방법이 지정에서 위. 수탁 모집 공고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청주시 공고 제2025-3709호)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설명함. 이에 공고문의 신청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리 법인이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으로서의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우리 법인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더불어 청주청원시니어클럽의 시설 개요 및 공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집 31~32페이지 참조를 요청함.

송홍영 이사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법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 감사보고서 제출, 운영법인에 대한 지자체 요구 자료의 한계 등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단법인보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송홍영 이사는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직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포함 사항(p.13) 등에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직원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이에 장규연 이사는 기관장 내정자 임명 및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함.

상임이사는 청주청원시니어클럽의 기관장으로 현재 청주청원시니어클럽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학도 관장을 내정하고 전체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함. 이와 더불어 법인전입금의 출원 계획을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으로 계획하고자 함을 설명함.

상임이사가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원 계획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김성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여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 이에 청주청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을 하고 법인전입금의 출원 계획은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10호 의안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청주상당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청주시로부터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운영법인 선정 방법이 지정에서 위. 수탁 모집 공고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청주시 공고 제2025-3704호)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설명함. 이에 공고문의 신청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리 법인이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으로서의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우리 법인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더불어 청주상당시니어클럽의 시설 개요 및 공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집 33~34페이지 참조를 요청함.

송홍영 이사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법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 감사보고서 제출, 운영법인에 대한 지자체 요구 자료의 한계 등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단법인보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송홍영 이사는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직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포함 사항(p.13) 등에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직원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이에 장규연 이사는 기관장 내정자 임명 및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함.

상임이사는 청주상당시니어클럽의 기관장으로 현재 청주상당시니어클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영희 관장을 내정하고 전체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함. 이와 더불어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을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으로 계획하고자 함을 설명함.

상임이사가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김성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여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 이에 청주상당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을 하고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은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11호 의안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청주서원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청주시로부터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운영법인 선정 방법이 지정에서 위. 수탁 모집 공고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청주시 공고 제2025-3705호)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설명함. 이에 공고문의 신청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리 법인이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으로서의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우리 법인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더불어 청주서원시니어클럽의 시설 개요 및 공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집 35~36페이지 참조를 요청함.

송홍영 이사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법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 감사보고서 제출, 운영법인에 대한 지자체 요구 자료의 한계 등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단법인보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송홍영 이사는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직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포함 사항(p.13) 등에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직원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이에 장규연 이사는 기관장 내정자 임명 및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함.

상임이사는 청주서원시니어클럽의 기관장으로 현재 청주서원시니어클럽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진흥 관장을 내정하고 전체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함. 이와 더불어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을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으로 계획하고자 함을 설명함.

상임이사는 박진흥 관장이 외부추천이사로 우리 법인과 함께 하고 있으나 현재 청주서원시니어클럽의 관장을 맡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 정관 제29조(의결제척사유)에 의거하여 이번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김성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박진흥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

가 찬성함. 이에 청주서원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을 하고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은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12호 의안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청주청남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청주시로부터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에 근거하여 운영법인 선정 방법이 지정에서 위. 수탁 모집 공고로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2일(청주시 공고 제2025-3707호)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위탁 운영법인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음을 설명함. 이에 공고문의 신청 자격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우리 법인이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으로서의 신청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고 우리 법인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함. 더불어 청주청남시니어클럽의 시설 개요 및 공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집 37~38페이지 참조를 요청함.

송홍영 이사는 시니어클럽의 운영법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 감사보고서 제출, 운영법인에 대한 지자체 요구 자료의 한계 등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단법인보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함.

송홍영 이사는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직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필수 포함 사항(p.13) 등에 시설종사자의 고용 승계가 명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는 직원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이에 장규연 이사는 기관장 내정자 임명 및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함.

상임이사는 청주청남시니어클럽의 기관장으로 현재 청주청남시니어클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송무아 관장을 내정하고 전체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함. 이와 더불어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을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으로 계획하고자 함을 설명함.

상임이사가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 및 법인부담금 출연 계획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김성우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장규연 이사가 재청하여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함. 이에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 수탁 신청을 하고 법인전입금의 출연 계획은 매년 2,000천원, 5년간 총 10,000천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제13호 의안 제7차 정관 개정(안)에 관한 심의】

상임이사는 제7차 정관 개정(안)에 관하여 김은경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우리 법인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는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 법인이 4개소의 시니어클럽 신규 수탁 신청을 진행함에 따라 시니어클럽의 설치 기준이 되는 「노인복지법 제31조 제6항」의 노인일자리지업기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를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

김성우 이사는 장기적으로 재단법인(사)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에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담아 개정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제안함. 김은경 사무국장은 당장 수행하지 않을 사업의 내용을 담아 정관 개정 시, 지자체의 인가가 쉽지 않음을 설명함. 더불어 지자체 지도점검 시,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목적사업을 담은 정관 변경 인가는 어려우며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의 개정 인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이야기함.

장규연 이사는 위.수탁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향후 사업 계획 수행을 위해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 개정을 미리 고민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 이야기함.

상임이사는 제7차 정관 개정(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구하고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송홍영 이사가 다른 의견이 없음을 이야기함. 이에 박진흥 이사가 재청하고 안건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5. 기타 보고 및 공지사항

김은경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스코의집 기관 사정으로 당초 안내된 안건 중 프랜차이스코의집 사용 기계장치(직조기) 불용 처리에 관한 심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심의 2건의 안건 논의가 오늘 회의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하며 이사님들의 양해를 구함.

상임이사는 2025년 제3차 임시 이사회 개최 일정을 안내하고 이사들의 참석을 요청함.

6. 폐회선언 및 마침기도

대표이사의 당부 말씀 후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마침.

위 이사회 회의록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대표이사 : 김 상 수 (인)

상임이사 : 조 중 희 (인)

이 사 : 홍 학 준 (인)

이 사 : 박 종 수 (인)

이 사 : 김 성 우 (인)

이 사 : 송 홍 영 (인)

이 사 : 박 진 흥 (인)

이 사 : 장 규 연 (인)

감 사 : 강 찬 석 (인)

감 사 : 박 홍 주 (인)